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792

발의연월일 : 2026. 7. 7.

발 의 자 : 황정아・조계원・박용갑
김 현・이훈기・최민희
황명선・오세희・문금주
김 윤・이재관・양부남
한민수・손명수・박지원
허성무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사업화시설 투자비 등을 세액공제 하도록 하는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요국이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고용 창출 등을 위해 자국내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첨단기술에 대한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AI, 반도체, 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생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벤처・스타트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 생산비용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하도록 함. 또한, 벤처・스타트업 등 영업이익이 불안정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시설

투자 및 제품 생산과 관련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지 못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선제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5 및 제100조의36 신설 등).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10절의6(제100조의35 및 제100조의3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절의6 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100조의35(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①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이하 “국가전략기술제품”이라 한다)의 생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국내에 소재한 제조시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공정을 거쳐 국가전략기술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비용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203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② 해당 과세연도 이전에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해당 과세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에는 제2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중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한 투자액에 대하여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에서 차감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 대상 제품의 생산수량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세액공제 대상 제품의 생산수량의 산정 및 제출, 제2항의 차감 금액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36(국가전략기술사업 연구개발·시설투자 및 국내생산세액공제에 대한 선환급 특례) ① 해당 과세연도 및 직전 2개 과세연도에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및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발생한 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개발, 시설투자 및 국가전략기술제품 생산에 대하여 제10조, 제24조 및 제100조의35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받지 못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미공제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하여 환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급세액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으려는 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은 자가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⑤ 기업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미공제금액에 대하여 제144조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미공제금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4조제1항 중 “제99조의12”를 “제99조의12, 제100조의35”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99조의12”를 “제99조의12, 제100조의35”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

례) 제100조의3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전략기술사업 연구개발·시설투자 및 국내생산세액공제 환급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4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절의6 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신 설>	제100조의35(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①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이하 “국가전략기술제품”이라 한다)의 생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국내에 소재한 제조시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공정을 거쳐 국가전략기술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비용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203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② 해당 과세연도 이전에 제24

	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해당 과세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중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한 투자액에 대하여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에서 차감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 대상 제품의 생산수량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세액공제 대상 제품의 생산수량의 산정 및 제출, 제2항의 차감 금액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0조의36(국가전략기술사업 연구개발·시설투자 및 국내생산세액공제에 대한 선환급 특례) ① 해당 과세연도 및 직전 2개 과세연도에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및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발생한 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개발, 시설투자 및 국가전략기술제품 생산에 대하여 제10조, 제24조 및 제100조의35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받지 못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미공제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하여 환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급세액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으려는 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은 자가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⑤ 기업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미공제금액에 대하여 제144조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미공제금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

조, 제25조의6부터 제25조의8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2,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96조의3 및 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	제99조의12, 제100조의35

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부터 제25조의8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2,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금액과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	② ----------제99조의12, 제100조의35-----

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